

2026년도 일반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계획 안내

I

모집개요

-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사업주당 최대 10억원(장애인 신규 고용조건 1인당 4천만원)
 - 공단 산정금액 산출 및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신청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신청자격 제한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2.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한다.
3. 무상지원금을 지금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의무 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5.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신청자격 제한 대상자 해당 시 신청서 반려

- 모집기간: 공고일 ~ '26. 1. 30.(금) 18:00 까지
 -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소인된 경우까지 신청접수
- 교 부 처: 공단 지역본부, 지사 또는 누리집(www.lead.or.kr)
- 접 수처: 사업주 본점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구비서류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기타 첨부서류(사업공고 직전 6개월 장애인 고용 현황 등)
 - ↳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이체 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
- 청렴서약서 【별첨 1】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 【별첨 2】
- 사업안내 정보제공서 【별첨 3】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별첨 4】

<전문기관 평가 시 추가 제출서류>

신청서류	발급기관	발급기준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청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6.2.1. 이후 발급분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22.1.1 이후부터)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근로자명부(중증 · 여성 · 고령 장애인)	사업체	'26.2.1. 이후
최근 3개년 재무제표(최근 결산, 비영리 매출 포함)		'22년~'24년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 (예: 지적재산권, 품질인증 서류 등)		-

- 무상지원금 용도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임금
 -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소요비

○ 지원대상자 의무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 전부 고용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함(미이행 시 월단위로 유지 기간 연장)
-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 장애인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현장 확인조사, 외부 전문기관 경영 평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 및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
- 연도 내 투자 완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뢰 시 현장 방문을 생략할 수 있음
- 심사기준에 의한 적격 사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애인근로조건, 고용환경 등 심사 시 우대

지원대상자 선정 시 평가가점 및 우대사항

○ 평가 가점(평가점수의 5% 가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주(인정 사업주)
- 지원대상자 선정 전 창업자금 지원 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의 문화예술분야 사업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이하 “BF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주 또는 BF인증 계획을 투자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업주*

* BF인증 계획을 제출하여 가점을 받아 선정된 경우, 3년 이내 본인증 획득하지 못할 시 시정요구를 거쳐 지원금 회수될 수 있음

** 가점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 점수의 한도는 10%이며 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항목별 배점한도에 따름)

- 장애인근로자 정규직 비율, 장애인근로자 급여수준, 장애인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여부
- 중증, 여성, 고령 장애인 고용실적, 지역사회·기업의 협조·지원 여부, 핵심선도사업, 친환경·녹색제품 생산, 산업AI국제인증 보유, 사업경영 전력 등

* 세부 심사기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 등에 따름
(공단 누리집 참조: www.lead.or.kr(정보공개 → 법령자료실 → 내부규정))

II

추진일정

단계	수행 방법	주체	시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고	공단본부	'26.1.2.
접수	◦ 신청서 TMS 등록 ◦ 구비서류 보완 및 TMS 세부내역등록	지역본부 지사	~'26.1.30.
접수분 본부통보	◦ 해당 지역본부(지사)별 접수분 본부 통보	지역본부 지사	~'26.2.2.
사전준비	◦ 확인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위촉 등	지역본부 지사	'26.2월
확인조사 및 확인조사서 제출	◦ 직무분석, 편의시설 진단, 4대보험 가입확인 등 ◦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원금액 산정 및 기술지도서 작성 ◦ 확인조사 결과 TMS 입력 완료 * 사업체 신청 확인조사서 제출	지역본부 지사	~'26.2.20.
외부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	◦ 신용평가기관 선정 및 사업체 경영안정성 및 투자 계획 등 평가	외부신용 평가기관	'26.3월중
심사위원회 개최	◦ 개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공단본부	'26.4월초
지원대상자 통보	◦ 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급내용, 지급 조건 등 필요사항을 사업체에 등기우편 통보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26.4월초
약정체결	◦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운영약정서 체결	지역본부, 지사/ 지원대상자	'26.4월
이행담보 접수	◦ 약정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담보(이행보증 증권, 부동산 균저당 설정 제공) 접수	지역본부 지사	-
투자확인	◦ 제출된 투자계획에 따라 연도 내 투자완료 확인 *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는 유의사항 참조	지역본부 지사	-

* 신청사업체 수 및 외부 전문기관 선정 일정 등에 따라 추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신청 확인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초단시간, 재택근무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목적(장애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을 통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고용(예정포함) 시 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는 당해연도 내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불성실한 투자이행 등 귀책으로 당해연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시 지원 취소 또는 2차 무상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작업장의 신축 및 단기간 내 구매가 불가한 해외 수입물품 등 당해연도 투자가 불가한 경우 신청 반려 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예산집행을 위해 지원금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지원대상자 중 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심사평가 결과 최소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미선정 되거나, 지원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총 투자금액을 실제 투자계획 보다 과장하지 않으며 신청서 상 신청 금액이 총 투자금액의 3/4($=75\%$)^{*}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백만원 이하 금액 절사
-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름